

의안번호	제 28 호
의 결 년 월 일	2006년 11월 14일 【 제 175회 】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음 성 군 수
제출년월일	2006년 11월 8 일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강
----------	---

제출년월일 : 2006.11.8.

제 출 자 : 음성군수

1. 안건명

-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이 개정되어, 의회의 의정활동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함

3. 개정주요골자

- 의회사무과 1명 증 (642명 ⇒ 643명)
- 전문위원 : 5급 1명 증

4. 조례개정안 : 별지붙임

5. 신·구 조문대비표 : 별지붙임

6. 조례개정근거법령 및 공문

-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통보
(도 자치행정과-7192, '06. 7. 3.)
- 음성군의회 전문위원 정원 증원 요청
(의회사무과-2066, '06. 7. 13.)

7. 예산사항 : 63,121천원

8. 입법예고 : 2006. 8. 2. ~ 8. 21.

-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 없음

9. 제안자 의견

- 개정된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에 의거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우리군은 5급 전문위원 2명을 둘 수 있어, 의정활동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642”를 “643”으로 하고, 동조제2항의 “12”를 “13”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642명</u>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2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u>643명</u> -----.</p> <p>1. (현행과 같음)</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3명</u></p>

[별표3]

음성군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총정원	<u>642</u>	310	<u>12</u>	105	54	161	<u>643</u>	310	<u>13</u>	105	54	161	
일 반 직	소계	<u>500</u>	267	<u>6</u>	50	32	145	<u>501</u>	267	<u>7</u>	50	32	145
	5급	<u>25</u>	12	<u>2</u>	1	1	9	<u>26</u>	12	<u>3</u>	1	1	9



충청북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통보

1.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2884호(2006.6.30.)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대통령령 제 19565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566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564호)의 공포('06.6.29.)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지침의 준수·이행 등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1부. 끝.

충청북도  사

수신자 더01-12(조직관련부서장)

07/03

★지방행정주사 조연형 지방행정사무관 오세영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협조자 지방행정 구논서 지방행정주사 박문근
주사보

시행 자치행정과-7192 (2006.07.03.)

접수 행정과-9867 (2006.07.04.)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523 전송 043) 220-2539 / joyh8887@cb21.net / 공개

5.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전문위원 직급·정수기준 개선

69

◀ 개정령 : 별표5 및 부칙 제3항 ▶

- ◇ 의회사무기구로 의원정수 10인 이상인 시·자치구는 의회사무국을, 군 및 10인 미만인 시·자치구는 의회사무과를 설치토록 기준 조정
- ◇ 지방의원 정수와 연계하여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설정

□ 개정취지

- 상임위원회의 설치 자율화 및 시·군·구의 의원정수 감소(3,485명 → 2,888명)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설치와 연계되어 있던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조정하고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의 정수기준 및 직급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시·군·구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의 개선

○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의회사무국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자치구
의회사무과	군 및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미만인 시·자치구

○ 기구 및 정원의 조정

- 종전의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확대되는 지자체는 사무과장(5급) 정원을 감축하고, 사무국장 정원(4급)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조치
- ※ 정원책정 결과는 책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 종전의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축소되는 지자체는 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07.6.30까지 감축 이행
- ※ 기구 확대 및 감축대상 지역 현황 : 별첨

□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의 개선

○ 직급 및 정수기준

<시·도>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정수	4급	5급이하
20명이하	5명내	4	1
30명이하	6명내	5	1
40명이하	8명내	6	2
50명이하	10명내	6	4
60명이하	12명내	7	5
80명이하	15명내	7	8
100명이하	17명내	8	9
110명이하	20명내	10	10
111명이상	21명내	11	10

<시·군·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정수	5급	6급이하
7명	2명내	1	1
9명이하	2명내	2	
15명이하	3명내	2	1
20명이하	4명내	2	2
25명이하	5명내	3	2
30명이하	6명내	3	3
31명이상	7명내	4	3

○ 정원책정

- 위 직급별 정수의 범위내에서 정원을 책정하되
- 보정정원의 범위내인 경우에는 시·도(서울시의 자치구를 포함)는 5급이하, 시·군·자치구(서울시의 자치구를 제외)는 6급이하의 정원에 대해서는 보정정원을 활용하여 책정하고
- 보정정원을 초과하거나 시·도(서울시의 자치구를 포함)의 4급, 시·군·자치구(서울시의 자치구를 제외)의 5급 정원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정원을 책정
 - ※ 정원책정 결과는 책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 전문위원 정원을 감축하여야 하는 지역의 경우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07.6.30까지 감축

III. 행정사항

○ 지침 시행일 : '06.7.1

○ 자치법규의 개정

- 고위공무원단체 도입, 국가직 지방직 전환, 의회사무기구의 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
 - ※ 금회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66호) 제39조제7항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 시·군·자치구의 부단체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기준 적용방식이 종전의 연도말 기준에서 각 분기말 산술평균으로 변경됨('07.1.1 행하는 직급기준 조정부터 적용)

참고 1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현황

□ 시·도 부시장·부지사 : 16명

- 정무직인 서울시 행정 1, 2부시장 제외
- 경기도는 행정 1, 2부지사

□ 시·도 기획업무담당실장 : 15명

-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획관리실장 제외

□ 도 농업기술원장 : 8명

-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기술원장 제외

참고 2 | 의회사무기구 확대 및 축소 현황

시·도	의회사무국으로 확대되는 지역(7개)	의회사무과로 축소되는 지역(8개)
서울시	금천구	중구
부산시	북구	서구, 동구, 영도구
인천시	계양구	
광주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경기도	시흥시	이천시, 포천시, 안성시
전남	광양시	
경남	양산시	



음성군의회



수신 행정과장

(경유)

제목 음성군의회 전문위원 정원 증원 요청

1. 행정과 - 9900(2006. 7. 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3. 우리 음성군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하여 5급 전문위원 1명을 증원 요청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 전문위원 5급 1명 ⇒ 개정후 : 전문위원 5급 2명. 끝.

음 성 군 의 회



장

수신자

07/13

지방행정주사보	이상준	과장	유보현	부의장	이한철	의장	유재일
협조자 의사담당	박재일	전문위원	이종반				

시행 의회사무과-2066 (2006.07.13.)

접수 행정과-10495 (2006.07.13.)

우 369-701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1-1

/ <http://www.es21.net>

전화 043-871-3509 전송 043-871-3510 / lesngjn@es21.net

/ 공개

【 고추하면 음성, 음성하면 고추!!! 】